

제22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2017.6.26.)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목 차

| | | |
|----|---|----|
| 1 | 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 |
| 2 |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
| 3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
| 4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
| 5 |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
| 6 |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
| 7 | 거창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4 |
| 8 |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안 | 16 |
| 9 |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8 |
| 10 |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
| 11 |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안 | 22 |

거창군 장남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17. 5. 31.

나. 발 의 자: 박희순 의원 대표발의(김종두, 변상원, 표주숙, 이성복, 강철우, 최광열, 권재경, 김향란)

다. 회부일자: 2017. 6. 8.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7. 6. 22.

2. 제안이유

- 거창군 장남감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남감 이용환경을 제공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위치(안 제3조)

라. 운영 및 기능(안 제4조, 안 제5조)

마. 회원 등록 및 의무(안 제6조, 안 제7조)

바. 연회비 납부 및 반환, 면제(안 제8조, 안 제9조)

사. 이용제한(안 제10조)

아. 회원 등록 취소(안 제11조)

자. 대여기간 및 수량 등(안 제12조)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저 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양육비 부담과 자기 자신의 여가 생활을 위한 결혼 기피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또한 기혼자도 자녀를 한 자녀만 낳으려는 경향이 현 실정임
- 나.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지역에 장난감은행을 설치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 이용 환경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등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6. 2,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2017. 6. 8.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17. 6. 22.

2. 개정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금업무에 대한 군민 신뢰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안의 내용에 위원회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어, 제명 변경함.
 -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 거창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나. 조례안의 내용에 맞게 목적규정을 변경함(안 제1조)
- 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부합되게 내용을 변경함(안 제2조)
 - 위원회 명칭 및 조 제목 변경, 위원 수를 규정(민간위원 1/3이상)
- 라. 조례 내용 중 미비점에 대하여 자구 수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 마. 위원회 관련 자구 수정함(안 제5조)
 - 회의 소집 절차 및 미비한 내용 보완
- 바. 법령 중복·재기재 사항 삭제함(구 조례 제2조·제3조, 제11조~제13조)

- 기금의 재원·용도,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 근거: 「식품위생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6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8조, 제13조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은 삭제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서
- 나.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6. 2,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2017. 6. 8.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17. 6. 22.

2. 개정이유

- 저출산 대응체계, 목재문화체험장 개장을 위한 조직정비와 주민밀착형 군정 수행을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실과소 소관업무 변경함(안 제3조)
 - 인구증가시책 추진: 행정과 ⇒ 기획감사실
- 나. 문화관광과 소관업무 신설함(안 제3조)
 - 목재문화체험장 관리·운영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저 출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담당부서 변경과 목재 문화체험장 준공에 따른 소관 부서를 지정하기 위함
- 나.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6. 토론요지: 해당없음
-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 8. 심사결과: **원안가결**
-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6. 2,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2017. 6. 8.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17. 6. 22.

2. 개정이유

- 지역공동체사업, 저출산 대응체계, 2017년 사회복지 인력확충안 반영과 대규모 문화관광시설 개장 준비를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함

3.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변동없음
 - 현행: 605명(본청266명, 의회11명, 직속기관102명, 사업소49명, 읍39명, 면138명)
 - 조정: 605명(본청266명, 의회11명, 직속기관100명, 사업소49명, 읍39명, 면140명)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지역공동체, 저 출산, 사회복지 인력확충, 문화관광시설 개장 등 조직개편에 따라 그에 적정 인원을 조정하기 위함
- 나.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6. 2,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2017. 6. 8.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17. 6. 22.

2. 개정이유

- 군민 중심 맞춤형 복지를 위한 읍·면 복지허브화 확대 추진 계획에 따른 면 기관명을 변경함

3. 주요내용

- 가. 면 기관명 변경함(안 별표)
 - 주상면사무소 ⇒ 주상면 행정복지센터
 - 남상면사무소 ⇒ 남상면 행정복지센터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맞춤형 복지 증진을 위해 복지허브화 확대 추진에 따라 읍·면사무소 기관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것으로
- 나.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6. 토론요지: 해당없음
-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 8. 심사결과: **원안가결**
-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6. 2,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2017. 6. 8.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17. 6. 22.

2. 개정이유

-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고 직원 복리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출장공무원 규정 삭제(안 제8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17.4.25.)으로 출장공무원 규정(제4조의2) 신설로 법령 중복·재기재 사항으로 삭제함

나. 경조사 특별휴가 신청 시 의무적으로 승인 강화(안 제23조제1항)

- (현행) 공무원은 경조사가 있을 경우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 ⇒ (변경) 군수는 주어야 한다.

다. 육아시간 남녀공무원에게 부여(안 제23조제4항)

- (현행)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 (변경)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부부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한 사람만 가능)

라. 자녀입영휴가 규정 신설(안 제23조제6항)

○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입영 그 날 1일 휴가 부여

마. 격무, 주요 공적에 따른 특별휴가 규정 신설(안 제23조제7항)

○ 재해·재난 등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경우 등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 허가

바. 공무원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 청구 시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 규정 신설함(안 제23조제8항) ※ 성별영향 분석 결과 반영

사. 경조사별 특별휴가일수를 경남도내 지자체와 맞춤(안 별표 4)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현행) 2일 ⇒ (변경) 3일

아. 장기재직휴가 사용일수에 대한 종전조례(조례 제2248호)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하여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없앴.

4. 전문위원 검토요지

가. 상위 규정 개정으로 출장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경조사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주어야 한대로 하여 자치단체장의 의무사항으로 개정하고

나. 육아시간 확대 및 자녀입영휴가 신설로 저 출산 대응노력과 주요 공적에 따른 특별휴가 신설, 공무원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 시 휴가 규정 신설 등 행정 변화와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6. 토론요지: 해당없음
-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 8. 심사결과: **원안가결**
-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6. 2,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2017. 6. 8.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17. 6. 22.

2. 개정이유

- 지방세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개정('17. 3. 28.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 중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거창군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자구 등 수정함(안 제1조·제3조·제5조)
- 나. 군수가 위임받은 도세 및 군세의 부과·징수권한 위임대상을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6조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른 도세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종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로 이관함(구 제7조)
- 라. 상위법령 중복·재기재에 불과한 위원회 규정 삭제(구 제8조)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 징수에 관한 내용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개정되어 이에 따라 「거창군세 기본법」을 전면 개정하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과 용어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6. 2,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2017. 6. 8.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17. 6. 22.

2. 제정이유

- 지방세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17.3.28. 시행)함에 따라, 「거창군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할 수 있는 소액 군세범위를 정함(안 제2조)
 - 납세고지서 1매당 50만원 이하
- 나.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종전 「거창군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규정 이관(종전 조례 제7조 ⇒ 안 제3조)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제정에 따라 「거창군 군세 징수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 위임된 소액 지방세를 수납하는 경우에 대해 소액 범위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 하였고
- 나. 그리고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업무 추진에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0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거창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6. 2,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2017. 6. 8.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17. 6. 22.

2.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13.1.1.”)이 개정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만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조항에 일반적인 위임조례의 형식으로 규정함(안 제1조)
- 나. 자료제공 및 신고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제7항 위임사항
- 다. 포상금 지급 대상·기준·한도·신청·방법, 환수를 정함(안 제3조~제8조)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8항 위임사항
- 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부터 제14조까지)
 - 위원회 기능, 구성, 제척·기피·회피, 위원장 직무, 위원회 운영 등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이 조례는 종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운영하던 것을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한 전면 개정 조례로
- 나.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6. 2,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2017. 6. 8.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17. 6. 22.

2. 개정이유

- 「민법」 개정('13.7.1.)으로 한정치산제와 금치산제를 폐지하고 한정후견제와 성년후견제를 도입함에 따라 지난 '15.12.10. 조례를 개정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였으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개정민법 시행 전('13.7.1.)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결격사유의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그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신설함(안 조례 제2297호 부칙 제2조)

-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민법(법률 제10429호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민법」이 2013. 7. 1 개정되면서 종전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용어를 폐지하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되어 2015. 12. 10 조례 제2297호로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였으나 종전 규정에 의거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아 이번에 개정하는 것으로서
- 나.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6. 2,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2017. 6. 8.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17. 6. 22.

2. 제안이유

- 가.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2017년 제224회 임시회에서 구)서흥여객 부지 내 관광호텔 유치를 위한 「구)서흥여객 부지 대부 및 매각계획」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사항이나
- 나. 대부에 따른 호텔 유치는 대부자의 부도, 공사지연 시에 재산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가 없어 재산을 대부하지 않고 재산의 용도를 지정하여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하여 호텔을 유치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함

3. 주요내용

가. 처분 개요

-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350외 1필지
- 면 적: 2,435m²

(단위: m², 원)

| 구분 | 재산종별 | 재 산 의 표 시 | | | 기준가격 | 매각사유 |
|----|------|---------------|-----|-------|---------------|---------------|
| | | 소 재 지 | 지목 | 면 적 | | |
| 계 | | 2필지 | | | 2,435 | 1,278,923,700 |
| 매각 | 토지 | 거창읍 김천리 350 | 대지 | 2,128 | 1,238,921,600 | 관광호텔 유치 |
| 매각 | 토지 | 거창읍 김천리 119-2 | 잡종지 | 307 | 40,002,100 | |

○ 변경사항

| 구 분 | 당 초 | 변 경 |
|------|---------------------|-----------------|
| 처분방법 | 대부자에게 수의매각 | 일반경쟁입찰(용도지정) |
| 처분시기 | 대부기간 만료시(관광호텔 중공 후) | 2017 하반기(6월~7월) |

3. 추진경위

- 2010. 2월: 농어촌버스 이전에 대한 MOU체결(서흥여객(주) ↔ 거창군)
- 2010.10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 2010.1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군의회 승인(교환취득)
- 2014.11월: 농어촌버스 터미널 이전건설 업무이행협약 체결
- 2015. 9월: 부지 교환 등기 및 서흥여객 이전 완료
- 2016. 3월: 부지내 사유지 취득 완료(김천리 119-2번지 860m²)
- 2016. 4월: 공유재산 용도변경(도시건축과⇒재무과) 및 지장물 철거
- 2016. 5월: 「군민 소통 한마당」 부지개발 주민 설명회 개최
 - ☞ 관광호텔 유치 군민공감대 형성
- 2016. 7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 ☞ 토지의 대부를 통한 호텔개발 가능(대부기간 종료 시 재산의 매수)
- 2016.11월: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일반재산)
- 2017. 1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 2017. 1. 1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시행
⇒ 「공유재산 지역경제 활성화 대부제」 도입으로 관광호텔 건립 가능

- 2017. 2월: 재산의 도시계획도로 예정구간 분할 완료(현 면적 확정)

- 2017. 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군의회 승인(수의대부 후 매각)
- 2017. 4월: 적극행정 사전감사 컨설팅 실시
- 2017. 5월
 - 위탁개발을 통한 호텔유치 브리핑(한국자산관리공사)
 - 호텔유치 외의 공공기관 이전 검토회의
 - 호텔유치를 위한 용도지정 매각 검토회의
 - 적극행정 사전감사 컨설팅 결과 회신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본건은 거창군 의회 제224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목적과 취지는 이미 동일 사안이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나. 추진 과정에 있어서는 승인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당초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법적 검토와 다각적인 추진 방안 등의 업무 연찬 부족에서 발생하는 사안이므로 향후 추진 시 충분한 분석과 검토를 하여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방안 강구가 필요하고
- 다. 종전 임시회에서 토론 및 주문한 관광호텔 건립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책 수립과 매각 절차 등에 관해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주문사항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관련부서와 업무협의를 통해 교통난 해소대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